

Ⅰ . 개정 내용

I 개정 내용

1 개 요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성능 점검, 유지보수·관리자 배치, 신고내용, 방법, 절차 및 각종서식 등을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에 규정함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546호, 2023.7.18.)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4965호, 2024.10.29.)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제152호, 2025.7.18.)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제정(제2025-48호, 2025.7.18.)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내용

□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기준 (제37조의2)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시 필요한 유지보수·관리 기준 마련 근거 명시 (제1항) (유지보수·관리기준은 고시로 마련)
- 유지보수·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 (제2항) (세부내용은 시행규칙 위임)

□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제37조의3)

- 관리주체의 유지보수·관리기준 준수 의무 (제1항) (대상 건축물은 시행령 위임)
- 관리주체의 성능점검 의무 및 대행 근거 (제2항) (대행하는자는 시행령 위임)
- 관리주체의 점검기록 보존 의무 및 제출 의무 (제3항) (보존기간은 시행령 위임)

- **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 (제37조의4)
 - 유지보수등의 업무 공사업자 위탁 근거 (제1항)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근거 (제2항) (선임기준은 시행규칙 위임)
 - 선임 또는 해임 시 지자체장 신고 의무 (제3항) (신고 절차 등은 시행규칙 위임)
 - 지자체장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의무 (제4항) (발급 절차 등은 시행규칙 위임)
 - 해임 시 30일 이내 새로 선임 (제5항)
 -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 선임절차 등 (제6항) (세부내용은 시행령 위임)
- **과태료 부과근거** (제78조 제1항 제6의2호 ~ 제6의6호)
- **시행일** ([부칙] 제3조)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

-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대상 등** (제37조의2)
 -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등 (제1항)
 -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을 대행하는 자 (공사업자, 용역업자) (제2항)
 - 점검기록 보존기간 (5년) (제3항)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 (제37조의3)
 - 정보통신기술자로서 과기부 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20시간 이상 받도록 규정
- **과태료 세부내용** ([별표 10] 제8호 ~ 제14호)
- **시행일 및 특례** ([부칙] 제1조 ~ 제2조)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등 (제8조)

- 유지보수·관리기준(고시) 내용(대상설비, 방법, 주기 등) 명시 (제1항)
- 과기정통부 장관의 지자체, 관련단체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권한 명시 (제2항)
- 과기정통부 장관의 자료수집, 조사, 연구 및 연구의뢰 권한 명시 (제3항)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 등 (제9조)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은 [별표]에 규정하도록 명시 (제1항)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일자 (신축, 증축 등으로부터 30일 이내) (제2항)
- 중복선임이 가능한 경우 명시 (제3항)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제10조)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절차 및 서류 (30일 이내) (제1항)
- 변경 신고 의무 항목 (법인 명칭, 성명, 주소 등) (제2항)
- 변경 신고 절차 및 서류 (30일 이내) (제3항)
- 지자체장의 사업자등록증명 및 건축물대장 확인 의무 (제4항)
-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신청 및 지자체장의 발급 의무 (제5항)
- 지자체장의 선임·해임 신고대장 기록 의무 (제6항)

□ 각종서식(별지 제10호~제14호 서식)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등

□ 시행일 ([부칙])

- ☐ 고시 목적 (제1조)
- ☐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제2조)
- ☐ 고시의 적용범위 (제3조)
- ☐ 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4조)
-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일반사항 (제5조)
- ☐ 유지보수·관리 등을 위한 자료 (제6조)
-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제7조)
- ☐ 유지보수·관리 (제8조)
- ☐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 (제9조)
- ☐ 성능점검 (제10조)
- ☐ 성능점검 대행 (제11조)
- ☐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제12조)
- ☐ 재검토기한 (제13조)
-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 ([별표 1])
- ☐ 성능점검 검토사항 ([별표 2])
- ☐ 대가산정 기준 ([별표 3, 4])
- ☐ 각종 서식 (별지 제1호 ~ 제4호 서식)
- ☐ 시행일 ([부칙])

II.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제도

Ⅱ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제도

1

개 요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제도란?

-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 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나

용어의 정의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문자,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 기구(器具), 선로(線路)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공사의 종류'에 따른 설비

관리주체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유지보수·관리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하는 일체의 행위

유지보수·관리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받은 기술계(초급~특급) 정보통신기술자

성능점검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것

성능점검 대행자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을 대행하는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

용역업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다

관련 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제78조, 부칙 제1조 및 제3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3, 제58조, 부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별표, 별지 서식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2 주요내용

가 대상 건축물 (영 제37조의2)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제외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제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후 고시하는 학교시설은 대상 건축물에 포함)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 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나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시행령 부칙 제2조)

- (제도시행 유예기간)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 중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준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는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구 분		유예기간
①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u>2025. 7. 18.</u>
②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u>2026. 7. 18.</u>
③	연면적 5천㎡ 이상 1만㎡ 미만 건축물	<u>2027. 7. 18.</u>

다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관리 (고시 제8조 ~ 제11조)

구 분	성능점검	유지보수·관리
근거규정	법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법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 ① 관리주체는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주요내용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수행주체	①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고용 ② (대행)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①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② (위탁) 정보통신공사업자
실시주기	매년 1회 이상	반기별 1회 이상
주요업무	①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5년간 보존) ②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 (지자체 요청시)	①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② 점검결과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기록

라**유지보수·관리자 자격기준** (시행령 제37조의3)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2. 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마**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실시기준** (고시 제12조 및 [별표4])

구 분	교육대상자	교육시기	교육시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영 별표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	선임일 전	20시간

※ 교육기관 : ICT폴리텍대학

바**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시행규칙 [별표])

구 분	선임자격	선임인원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특급기술자	1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고급기술자 이상	1
-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중급기술자 이상	1
- 연면적 5천㎡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초급기술자 이상	1

사**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일** (시행규칙 제9조제2항)

-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함

구 분	선임기준일
①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
② 용도변경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③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아**유지보수·관리자 중복 선임기준** (시행규칙 제9조제3항)

-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

자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신고기간 :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②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 ③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경력수첩) 사본
 - ④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⑤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차

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신고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 변경신고 사항
 -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 (유지보수·관리자) 성명,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경력수첩 발급번호
- 신고기간 :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변경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②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③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시 제출)

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과태료) (영 [별표10] 제8호 ~ 제14호)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타

대상 정보통신설비 (고시 제7조 및 [별표1])

구 분	설비 종류
통신설비 (8개 설비)	케이블설비, 배관설비, 국선인입설비, 단자함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 전화설비,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 선로설비
방송설비 (1개 설비)	방송음향설비
정보설비 (23개 설비)	네트워크설비, 전자출입(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 주차유도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비상벨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 홈네트워크 설비, 빌딩안내시스템(BIS), 전기시계시스템, 통합 SI시스템, 시설관리시스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지능형 인원계수 시스템, 지능형 경계 감시 시스템, 스마트 병원 설비, 스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스마트 공장 시스템,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지능형 이상음원 시스템,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디지털 사이니지
기타설비 (2개 설비)	통신용 전원설비, 통신접지설비

파

대가산정 기준 (고시 [별표3])

○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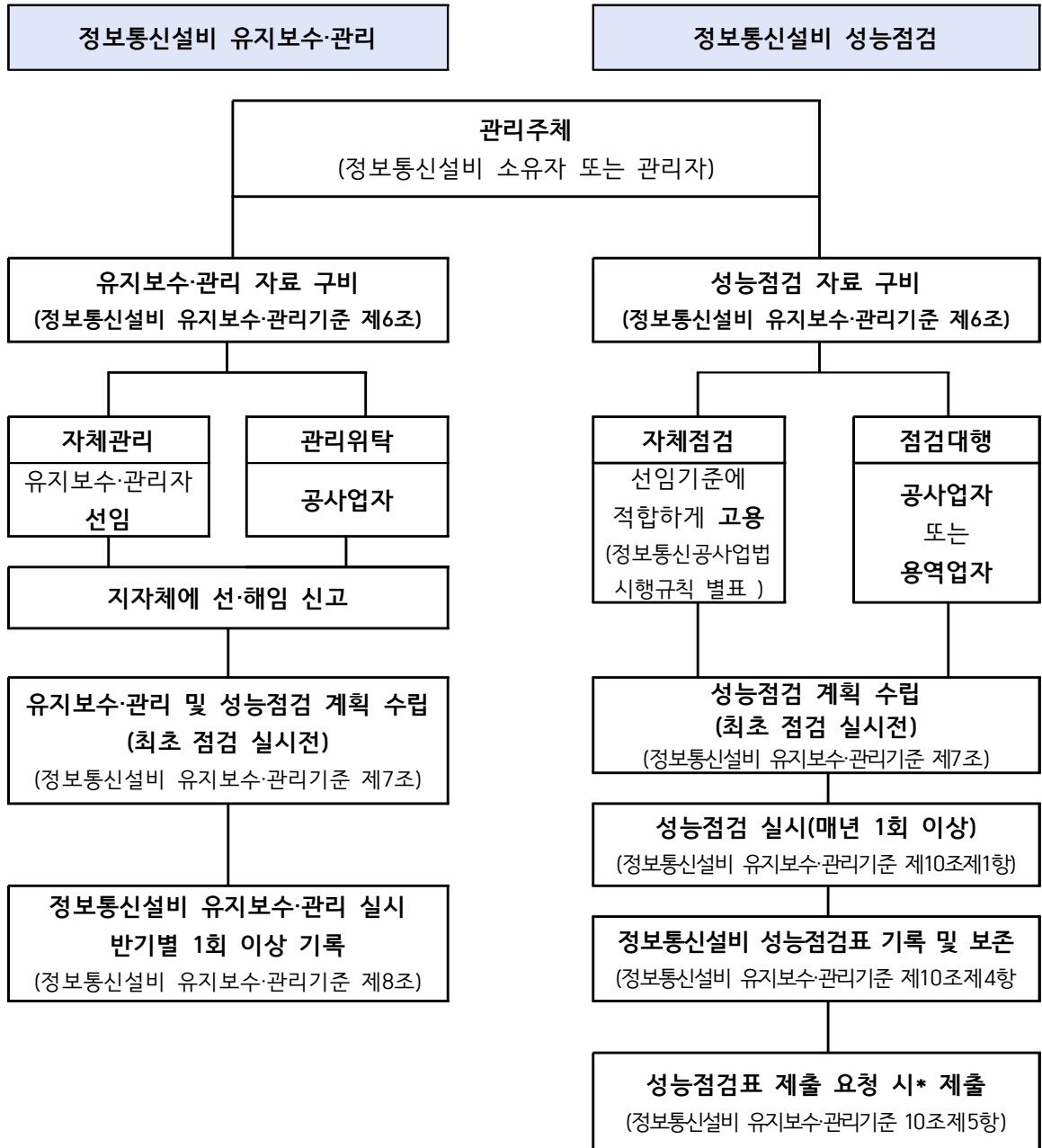
직접인건비(설비수량 × 기준인원 × 조정계수 × 노임단가)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부가가치세

항 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 직접인건비 - 특급 정보통신기술자 - 고급 정보통신기술자 - 중급 정보통신기술자 - 초급 정보통신기술자	인 인 인 인				
2) 직접경비 - 여비 - 차량운행비 - 현장소요경비 등	식 식 식				
3) 제경비 (1의 110~120%)	식				
4) 기술료 ((1+3)의 20~40%)	식				
5) 부가가치세 ((1+2+3+4)의 10%)	식				
합 계					

- 직접인건비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설비의 수량과 표 1의 기준인원, 표 2의 조정계수를 곱하여 수량에 반영하고,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술등급별 노임 단가를 곱하여 산정
- 직접경비 : 당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차량운행비, 현장소요경비 등
-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내지 120%
- 기술료 : 당해 업무를 위해 점검수행자가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료 및 이윤 등을 포함한 비용으로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내지 40%

가

업무처리 절차



* 시·군·구청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업무내용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정보통신담당
신 고 접 수 신고서류 확인 신고 결과 통보 기안 및 결재	1.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 서류접수 -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확인 - 재직사항 및 경력사항 확인 2.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서류접수 - 변경사항 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3.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서류접수 - 신청인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확인 4.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업무